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5

2026. 3. 2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13. 강남구청장(위생과)

나. 상정의결

-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6. 3. 26.)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보건소장 이종철)

○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해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 급식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등록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 어린이·노인, 조리원, 원장·교사, 종사자 등 대상별 영양교육

○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월별 식단, 표준레시피 등 정보 제공

○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 시설, 장비, 비품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사무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8길 12, 2층

○ 시설규모 :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 총면적 199.8㎡

○ 인력현황 : 총 13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

○ 위 치 도

	
위 치	시설 전경

마. 민간위탁기간

○ 2026. 9. 1. ~ 2030. 12. 31.(4년 4개월)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655,000천원 (국20%, 시40%, 구40%)

○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335,730,240	51.26	- 2026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8,369,280	1.28	
		제수당 급식비	20,160,000	3.08	
		제수당 직무수당	18,000,000	2.75	
		제수당 직책수당	3,600,000	0.55	
		제수당 명절수당	11,200,000	1.71	
		퇴직충당금	33,088,290	5.05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3,361,080	2.0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6,960,470	2.59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 고용보험료	2,638,290	0.40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산재보험료	4,334,340	0.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1,730,260	0.26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469,172,250**	**71.63**	
	②운영비·경비	여비(국내/국외)	21,680,000	3.31	- 2026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교 육 훈 련 비	1,560,000	0.24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임 차 료	5,090,000	0.78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우 편 통 신 비	2,680,000	0.41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소 모 품 비	1,412,000	0.22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수 선 유 지 비	9,120,000	1.39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공공요금 및 제세	25,766,550	3.93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기 타 경 비	46,190,000	7.05	- 2026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소 계	**113,498,550**	**17.33**	
	③ 사 업 비		72,329,200	11.04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655,000,000**	100	
수	④ 입장료·이용료		-	-	

입원가	⑤ 사용료	-	-	
	⑥ 기타수입	-	-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	-	
위탁비용(Ⓐ-Ⓑ)		655,000,00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안)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재위탁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3.		2026. 4. ~ 5.		2026. 6.		2026. 7.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 주요 업무

- 구청장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식생활법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급식소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향상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 급식소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그 밖의 업무

○ 운영 현황

- 급식소별 지원 업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현재 위탁업체	위탁기간	인력 현황 (총 13명)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 정상진)	2021. 9. 1. ~ 2026. 8. 31. (총 5년)	센터장: 1명 팀 장: 2명 팀 원: 10명

○ 성과 평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 성과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근거하며, 서울시의 경우 연 1회 자치구 간 교차평가 방식으로 실시함.
- 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계획 수립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분기별 자체점검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
- 연간 목표를 전부 달성하고, 매년 다르게 운영하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이용자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연도별 예산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맞게 집행하여 불인정 금액 없음.
-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이용자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서에서 확인 및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음.

○ 예산 구조

- 해당 운영 사무는 식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수행됐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재된 사항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임.
- 다만, 기존의 **센터 예산 분담**은 보조금 매칭 비율 기준 국30: 시35: 구35였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기준이 국20: 시40: 구40으로 변경되어 지자체 부담률이 다소 높아지게 되었음.

○ 재위탁 공개모집

- 강남구의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이행기간 중에 2025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과 사회복지급식에 대한 지원 기능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였고 운영에 특이사항 없었음.
- 기존의 위탁계약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기간의 사무 운영에 대한 계약이고, 이 위탁계약의 만료 시점이 되어 가는 상황임.
- 해당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위생·안전·영양 관리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 집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강남구 특화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관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6.] [대통령령 제35811호]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탁계약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6호]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7. 1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2059호]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70호]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